

발전기금 관리규정

□ 제정 : 2008. 04. 17.

□ 개정 : 2017. 05. 01.

□ 개정 : 2018. 04. 0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발전을 위하여 출연된 기부금(품) 및 기금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1. 기부금(품)이라 함은 교육, 연구 및 장학 등 학교발전을 위하여 본교에 무상으로 출연된 현금, 부동산, 유가증권, 시설, 설비 및 물품 등의 재산을 말한다.
2. 기금이라 함은 제1호에 의해 조성된 기부금(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내규에 의하거나 총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독립회계를 말한다.
3. 대학이라 함은 본교의 본부 행정기관을 말한다.
4. 단위기관이라 함은 본교의 대학원(특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을 포함), 단과대학, 학과(부), 부속기관, 부설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발전기금의 종류) 발전기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일반발전기금: 본 대학교 발전을 위해 기부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기부한 발전기금
2. 지정발전기금: 기부자가 특정 대학(원), 학부(과,전공) 및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한 발전기금
3. 특별목적발전기금: 기금의 설치목적은 달성하기 위하여 기부한 발전기금

제4조(기부금과 기금의 사용) 기부금(품)과 기금은 출연 목적 및 용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범위) 이규정은 본교의 대학 및 단위기관의 발전기금의 모금 및 그 운영에 적용한다.

제2장 발전기금관리위원회

제6조(설치) ① 기부금(품) 모금계획수립과 효율적인 기금 운영관리 및 심의 등을 위하여 발전

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대학 및 단위기관에서 발전기금을 조성하고자 할 때 기획처 기획과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제7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발전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
2. 발전기금 모금에 관한 사항
3. 발전기금의 관리·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4. 출연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
5. 기금유치공헌자의 포상에 관한 사항
6. 단위기관 지정기금의 운영결과 심의
7.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부자가 특정 용도를 지정한 기금 및 이자를 특정용도에 사용할 경우
2. 발전기금의 사용 용도가 장학기금일 경우

제8조(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9조(위원장 과 위원)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하고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는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정기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사정에 따라 임시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요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의 소집과 의결) 회의의 소집과 의결은 본교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영

제13조(기금의 사용) ① 기부금(품)을 출연 받은 기관은 기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당해 년도에 사용하거나 또는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일반발전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이하 ‘수익금’이라한다)은 매년 수입 및 지출예산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교육용시설, 기자재 확충, 학생 장학금, 우수교원 초빙, 우수학생 유치, 교육과정 개발, 교원의 연구비, 기타 교육여건 개선 및 본교의 교육·연구의 발전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특정 대학(원), 또는 학부(과,전공)에 기부한 지정발전기금은 위원회에 보고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대학(원), 또는 학부(과,전공)의 발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④ 특별목적발전기금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운영 및 보고) ① 기부금(품)을 출연 받은 부서장 및 단위기관의 장은 기부금(품)을 출연 받은 후 10일 이내에 출연자, 출연목적, 출연금액, 사용용도 등의 내용을 작성하여 기획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전기금 조성사업은 기획처 기획과가 주무가 되고 조성사업의 총괄 및 기금의 입출금 관리는 기획처장이 한다.

③ 기획처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기금운영계획을 작성하여 발전기금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기부금(품)은 전액 대학에 위탁관리 한다.

제15조(재원의 범위)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단 전입금
2. 수원대 동문, 학부모, 교직원등의 기부금
3. 기업체, 장학재단, 개인독지가등의 기부금
4. 간접비 수입금
5. 기금의 운영 수익금
6. 학교채의 발행
7. 기타 수원대를 사랑하는 단체 및 사람들의 기부금

제16조(예산편성) 기획처장은 기금운영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차기년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7조(감사) 총장은 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를 임명할 수 있다.

제18조(회계처리) 모든 기부금은 본교의 회계에 입금하여 지출되어야 하며 독립된 별도의 계정 과목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제반경비) 발전기금 모금에 필요한 사업비와 제반 경비는 본 대학교의 재정상황과 발전기금 모금의 실적을 고려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기획처장이 집행할 수 있다.

제20조(영수증 발급) 현금, 유가증권 및 물품을 기부한 자에게는 총장명의로 영수증 및 기부증서 등을 발급한다.

제21조(발전기금 유치자에 대한 포상) 발전기금 조성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에게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장 기부자에 대한 예우

- 제22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① 총장은 기부자에 대하여는 기부자의 고귀한 뜻을 영구히 기리기 위하여 적절한 예우를 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한다.
- ② 기금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③ 기부자 예우와 관련한 대내외적인 정책의 변화가 발생할 시에는 제 1항의 절차를 거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